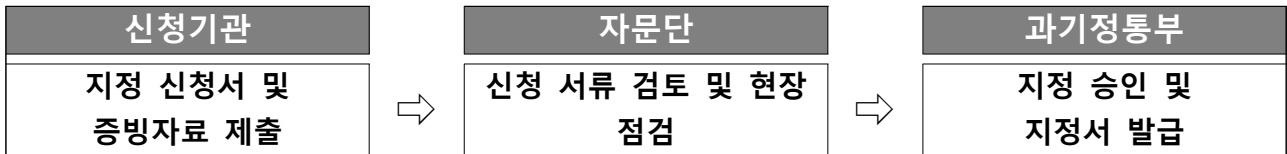


# 데이터 유통·활용 제도 안내 설명 자료

## 1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제도(데이터산업법 제11조)

- **[제도소개]** 누구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·활용 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보안대책이 갖추어진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 운영하는 제도(데이터산업법 제11조)
- **[안심구역 지정]**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심구역 지정 심사를 위한 자문단 구성,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(서면·현장 최종)하여 지정
  - **[지정·운영]** 분석·활용을 위한 공간 구축 및 보안대책 수립 등을 갖추어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, 매년 1회 관리 실적 및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  
<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절차 >



- **[보안대책]**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
  - ① (기술적) 시스템 접근 통제 및 네트워크 보안 등 기술적 보안관리
  - ② (물리적) 출입통제, CCTV 운영 등 시설/장비에 대한 물리적 보안관리
  - ③ (관리적) 책임자 지정, 정기점검 등 조직, 정책/절차 수립을 통한 관리적 보안관리
  - ④ (기타) 온라인 안심구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

### □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현황('25.7월말 기준)

안심구역 운영기관	제공 데이터	안심구역 운영기관	제공 데이터
K-DATA(서울/대전)	금융, 의료데이터 등	NIA(성남)	헬스케어데이터 등
한국전력공사(서울/나주)	전력데이터	한국도로공사(성남/온라인)	국토교통데이터
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(온라인)	농식품데이터	전북특별자치도·국민연금공단(전주)	사업장정보 등
강원특별자치도(춘천)	의료데이터	한국국토정보공사(서울)	공개제한 공간정보
건양대학교병원(대전)	의료데이터	경북대 첨단기술원(대구)	에너지데이터 등
기술보증기금(부산)	기업 재무데이터		

1-①

K-DATA 데이터안심구역 소개

- **[추진 개요]** 활용도 높은 양질의 미개방데이터와 안전한 분석 환경 제공 및 지역거점 운영·관리(서울·대전·대구 총 3개소)
- **[추진 경과]** 서울센터('20.3월~)·대전센터('23.5월~)에 이어 공모사업을 통해 대구 안심구역 신규 구축 및 시범운영(~'24.12월), 안심구역 지정 승인('25.5월)
- **[분석환경 지원]** 서버용 분석 인프라\* 및 보안 체계(전용회선, 출입통제, CCTV 등)가 완비된 개인/팀 단위 분석 환경 지원
  - \* 서버 분석 자원 제공(가상화, GPU 서버) 및 데이터 분석/시각화 등을 위한 다양한 분석도구(R, Python, SAS 등) 지원

◇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안심구역 서울·대전센터 소개

- 활용도 높은 유용한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·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인분석실, 단체분석실 등 서울센터 80여석, 대전센터 24석 운영 중

<안심구역 서울센터 전경>



개인 분석공간



단체 분석공간



휴게공간

<안심구역 대전센터 전경>



개인 분석공간



단체 분석공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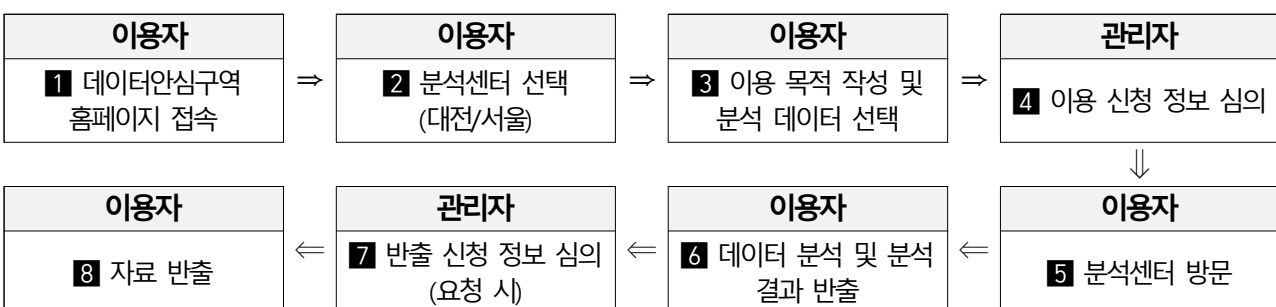
휴게공간

- 안심구역은 고성능 GPU 등 분석자원과 R studio, Jupyter Lab, SAS, Tableau, QGIS 등 다양한 분석도구, 전문 분석가의 상주 지원 서비스 제공 중
- 금융, 의료·연구, 통신, 유통 등 212여종의 데이터 확보 및 3개 분석센터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미개방데이터 제공 중
- 공공·민간의 데이터 보유기관·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수요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확보 추진 예정

※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 노력 등 지표 반영(기획재정부, '24년~)

<b>금융데이터</b> 	<b>의료·연구데이터</b> 	<b>통신·교통데이터</b> 	<b>상권데이터</b> 	<b>소재·에너지데이터</b> 						
<b>물류·유통데이터</b> 	<b>기업·제조데이터</b> 	<b>분석센터 연계기관</b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b>통계데이터센터</b> 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데이터: 행정통계자료, 민간통계자료</li> <li>센터위치: 대전(본원), 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 <b>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</b> 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데이터: 진료내역, 처방전 내역 등</li> <li>센터위치: 원주(본원),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 등 10개소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 <b>고용정보 통합분석시스템</b> 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데이터: 고용보험, 워크넷 등 고용관련 행정통계</li> <li>센터위치: 서울(21.05)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		<b>통계데이터센터</b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데이터: 행정통계자료, 민간통계자료</li> <li>센터위치: 대전(본원), 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</li> </ul>	<b>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</b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데이터: 진료내역, 처방전 내역 등</li> <li>센터위치: 원주(본원),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 등 10개소</li> </ul>	<b>고용정보 통합분석시스템</b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데이터: 고용보험, 워크넷 등 고용관련 행정통계</li> <li>센터위치: 서울(21.05)</li> </ul>
<b>통계데이터센터</b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데이터: 행정통계자료, 민간통계자료</li> <li>센터위치: 대전(본원), 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</li> </ul>									
<b>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</b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데이터: 진료내역, 처방전 내역 등</li> <li>센터위치: 원주(본원),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 등 10개소</li> </ul>									
<b>고용정보 통합분석시스템</b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데이터: 고용보험, 워크넷 등 고용관련 행정통계</li> <li>센터위치: 서울(21.05)</li> </ul>									

□ **[이용 방법]** 홈페이지 이용신청을 통해 이용 목적 및 반입 데이터를 심의하고, 이용·분석 후 분석결과에 대한 반출 신청 및 심의



2

**데이터 가치평가제도(데이터산업법 제14조)**

- **[제도소개]**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기법 및 모델에 따라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(데이터산업법 제14조)
- **[평가기법]** 지침에 명시된 세 가지 기법(①시장·②수익·③원가접근법) 중 데이터 특성과 용도에 따라 가능한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

<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비교 >

	시장접근법	수익접근법	원가접근법
개념	시장에서 유사한 데이터의 가치는 얼마인가?	데이터를 통한 추가 이익은 얼마인가?	데이터 생산 비용을 충당하는 가치는 얼마인가?
적용 대상	동일·유사한 데이터의 시장가치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	미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	데이터 생산 원가 파악, 또는 대체 데이터 확보 가능한 경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활발한 거래 시장 존재</li> <li>유사 거래 사례 존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출 증가 추정</li> <li>비용 절감 추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일 데이터 생산 원가</li> <li>대체 데이터 확보 비용</li> </ul>

- **[활용방안]**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보증·대출, 투자를 받거나, 데이터 거래 시 가격책정 등 평가 결과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

목적	세부 내용
금융 이전·거래 전략	데이터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데이터의 매매, 라이선스 가격 결정 기업의 가치증진, 분사(spin-off),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

- **[평가기관]**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(23.3.2)

평가기관	담당부서	연락처
기술보증기금	데이터사업팀	1544-1120
(주)나이스디앤비	TCB평가실	02-2122-1791
신용보증기금	데이터가치평가팀	02-710-4563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데이터가치평가팀	02-3299-6023

2-①

**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**

□ **[사업목적]** 高부가가치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·초기 중견기업이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를 보증·대출, 투자·거래 등에 활용하도록 가치평가 지원

□ **[지원규모]** 총 70개社\* (보증·대출 45개社, 투자·거래 등 25개社)

\* 부문별 지원규모는 기업 수요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□ **[평가대상]** 일정 수준의 품질이 담보되고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효익(가치)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(단, 공공데이터 제외)\*

\*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(과기정통부 공고, 2022.7.15.)

□ **[지원대상]**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

□ **[지원내용]** 데이터 가치평가기관\*이 수행하는 **평가비용의 50% 지원**

\* 「데이터산업법」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으로, 기술보증기금, (주)나이스디앤비, 신용보증기금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가나다순)

부문	지원규모	정부지원금(VAT 제외)	우대사항
보증·대출	45건	가치평가비용의 50% ※ 정부 미지원분은 평가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	창업기업(7년 이내), 청년기업, 소기업·소상공인 해당 시 최대 25% 가산 지원
투자·거래 등	25건		

□ **[접수기간]** '25. 3. 21.(금) ~ 12월중(예산 소진 시까지)

□ **[접수방법]**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([value@kdata.or.kr](mailto:value@kdata.or.kr))

3

**데이터 품질인증제도(데이터산업법 제20조)**

- **[제도소개]**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오류 여부와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·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(데이터산업법 제20조)
- **[인증대상]** 정형·반정형·비정형 데이터 대상으로 품질기준(ISO/IEC25024,5259-2, 8000-62)에 따라 ①데이터 내용, ②데이터 관리체계를 심사
  - ①데이터 내용 : 데이터 레코드, 필드에 입력 되어있는 문자, 숫자 등 데이터의 값
  - ②데이터 관리체계 : 데이터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업무 기능, 조직, 프로세스 체계
- **[운영절차]**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증기관 요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을 지정·관리, 인증기관은 인증신청·접수, 심사, 인증서 발급 등 수행



- **[활용방안]**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품질증명, 거래 신뢰성 확보, 내부 품질관리 진단, 마케팅 등 다양한 기대효과 창출

목 적	세부 내용
검증 전략 홍보 정부사업 가점	정부과제, 프로젝트, 용역 등 데이터 산출물 품질증명 성과지표(KPI) 활용, 내부 품질관리 계획 수립 기업 가치 제고, 대외투자 유지 등 활용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(수요·공급기업) 지정 시 가점 등

- **[인증기관]** 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("23.7.6)

인증기관	담당부서	연락처
(주)씨에이에스	데이터인증센터	02-6748-4958
(주)와이즈스톤	데이터인증센터 인증운영팀	02-6257-5958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	SI데이터품질팀	010-5111-1574

**3-①**

**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**

- **[사업목적]** 데이터를 생산·유통·활용 중인 중소·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, 데이터 유통·거래 활성화
- **[지원규모]** 총 45개社(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)
- **[인증대상]** 민간기업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, 데이터셋, DB 등의 정형데이터, 비정형데이터와 데이터 관리체계

인증유형	인증대상		
데이터 내용	①정형·반정형데이터		②비정형데이터
데이터 관리체계	①프로젝트	②조직	③정보시스템

- **[지원대상]** 데이터를 생산·유통·활용하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
- **[지원내용]** 데이터 품질인증기관\*이 수행하는 품질인증 비용의 **최대 1,150만원(VAT 제외) 지원** 및 **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제공**

\* 「데이터산업법」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, (주)씨에이에스, (주)와이즈스톤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 수행

**< 지원사업 지원조건 >**

▷ 본 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50% 조건으로 지원  
 ※ 총사업비(2,300만원)는 정부지원금(인증 비용)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고, 민간 부담금은 인증대응, 품질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(현물)로 구성 가능

- **[접수기간]** '25. 3. 21.(금) ~ 예산소진시까지
- **[접수방법]**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(dq@kdata.or.kr)

- **(제도소개)**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,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(데이터산업법 제21조)
- **(표준계약서 종류)** 데이터 제공형, 데이터 창출형, 데이터 가공서비스형, 데이터 중개거래형(플랫폼운영자-데이터제공자, 플랫폼운영자-데이터이용자)

데이터 제공형		데이터 창출형		데이터 가공서비스형		데이터 중개거래형	
<p>데이터 제공자 X1 → 양도 → 데이터 이용자 Y1</p> <p>데이터 제공자 X2 → 이용허락 → 데이터 이용자 Y2</p> <p>데이터 제공/이용자 X3 → 상호 이용허락 → 데이터 제공/이용자 Y3</p>	<p>당사자 X1, 당사자 X2, 당사자 X3</p> <p>로 데이터(Raw Data)   파생데이터(Derived Data)</p> <p>IoT 센서 부착을 통한 수집 데이터, 솔루션 상품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</p> <p>결합, 정제, 분석</p>	<p>가공사업자 X사 ↔ 가공서비스 계약 ↔ 이용자 Y사</p> <p>X사 DB → 데이터 제공 → Y사 DB</p> <p>데이터 정제/분석/결합 등 → 가공데이터 상품 → AI 학습용 데이터 등</p>	<p>데이터 제공자 X1, X2, X3 → 오픈마켓형 플랫폼 → 데이터 이용자 Y1, Y2, Y3</p>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비독점적) 이용허락 계약</li> <li>• 일방 당사자가 데이터 보유</li> <li>• 이용 권한에 대한 조건을 정하기 위한 계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수의 당사자가 관여</li> <li>• 창출된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리를 결정하기 위함</li> <li>• 공동창출에 관여한 당사자 간 이용권리, 이익배분 등을 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데이터 가공서비스의 도급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데이터 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 플랫폼을 통해 거래</li> <li>•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계약</li> </ul>				

- **(활용방법)** 계약 당사자가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의 개별 특성·거래 관행에 따라 당사자간 상호 합의로 완성
- **(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)** 데이터 거래와 거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과 거래 계약시 주요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표준계약서 각 조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내용을 안내
- **(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배포)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 다운로드

□ **설립 목적** [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내지 제41조]

-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의 신속 조정 및 피해 구제를 통해 공정·합리적 데이터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□ **출범 및 구성**

- **(출범)** 법조계·학계·공공·산업계 등 분야에서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('23.10.12)
- **(위원회 구성) 관계 규정**(15~50인, 학계·공공·법조계·산업계 포함) 및 **유사 위원회 구성 현황**(학계·법조계 위주, 당연직 포함) 등을 고려하여 구성
  - 분쟁조정 경험 및 관련 학식을 보유한 **민간 전문가(위촉직) 등 28인**

위촉직				당연직	합계
법조계	학계	공공	산업계		
11명	10명	2명	4명	1명	28명

□ **주요 기능업무 절차**

- 데이터 생산·거래·활용 관련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을 수행하며 조정조서는 '재판상 화해'와 동일한 효력
- 분쟁 처리 절차
  - **(접수단계)** ①분쟁조정 신청(ddrc.go.kr) ➡ ②접수·요건 검토 ➡ ③(필요시) 자료보완 ➡ ④위원장 검토 및 안건 접수 ➡ ⑤조정부 구성
  - **(조정단계)** ①조사보고서 작성 ➡ ②(필요시)전문가 자문 요청 ➡ ③ 조정부 회의 및 조정안 작성
  - **(결과통보 단계)** ①조정안 통보 ➡ ②조정조서 확정(재판상 화해 효력)